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시위원선임·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8. 2. 4. 운영위원회

1. 審 查 經 過

가. 발의일자 : 2008년 1월 17일

나. 발 의 자 : 윤동규 의원 외 4인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25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4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8년 2월 1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윤 동 규 의원)

가. 개정이유

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기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관련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검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(안 제5조)
- 자료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(안 제7조)
- 실비보상 근거마련(안 제8조)
- 검사위원의 신분 상실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(안 제9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김 병 욱)

- 본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으로 입법내용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, 지방의원의 일비 지급기준인 회 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,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을 정하고 예산집행의 지침을 정립하는 등 법적합성 있는 개정 이라고 사료 됨.
- 4. 審査結課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암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제출일자 : 2008. 1. 17

번 호 발의의원 : 윤동규의원 외 4인

1. 개정이유

○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기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관련 규정 중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 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검사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(안 제5조)
- 나. 자료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 법조항 및 현실에 맞게 보완(안 제7조)
- 다. 실비보상 근거마련(안 제8조)
- 라.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(안 제9조)

3. 관련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3조 제1항(검사위원의 선임)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 및 53조(검사위원의 직무)
- 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

4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.)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"영등포구"라 한다)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(이하 "검사위원"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이상 5명이하로 한다.

제3조(자격)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1. 공인회계사
- 2. 세무사
- 3.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
- 4.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

제4조(선임방법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.

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검사위원은 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 및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작성하는 세입·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수행한다.

- ②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검사위원은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검사위원의 임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 된다. 다만,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6조(본회의에서의 답변)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료제공 및 협조)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그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실비보상) 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 급할 수 있다.

②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 지급한다. 다만,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.

제9조 (검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검사위원이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.

- ②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.
- 1.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 능하게 된 때

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
- 3.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- 4.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
- 5.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
- ③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검사위원의 제재) ①검사위원이 제9조 제2항의 3, 4,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.

②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